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4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10. 11(목) 10:00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62 호
-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제출일자 : 2012. 9. 22
- 회부일자 : 2012. 9. 28

2. 제안 이유

-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4. 관련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12.08.08 ~ 08.28(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 이상없음
 - 성별영향평가 : 이상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일자 : 2012.09.21
 - 심의결과 : 원안의결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2년 9월 24일 제출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시민이 건강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수립,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가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강도시 정의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WHO, 2004)

◇ 건강도시 목적

건강도시의 건강과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을 달성하려는 데 있다

◇ 건강도시 특징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강력한 정치적 지원, 각 분야 간의 협력,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 생활터전의 활동적 통합, 건강 프로파일과 지역 활동 계획의 개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참여적 연구와 분석, 정보 공유, 대중매체의 참여, 사회 내 모든 집단의 취합,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과 사회의 개발의 연계, 국가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 건강도시 조건

-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
-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
- 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 다양하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 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 등의 충족
- 시민들 간의 다양한 만남,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 역사, 문화 및 생물학적 유산 혹은 지역사회 내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를 도모
- 모든 시민에 대한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의 최적화
-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
- 이상의 요건들이 서로 양립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요소들을 증진시키는 도시 행태

◇ 건강도시 역사

건강도시 개념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이라는 WHO의 선언(알마아타,1977)과 이후 1980년대에 등장한 신 공중보건운동(New public health)의 시작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다. 그 후 198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건강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선언되었다.

건강도시 사업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 지역사무국에서 16개 나라 30개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 서태평양지역은 1980년 말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였다.

1991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지목하였으며, 세계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환, 경험공유, 상호간 지지체계 확립, 새로운 전략개발, 결과 및 아이디어 공유, 파트너쉽 형성 등을 위하여 1,000여개 도시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 건강도시 도입배경

WHO에서 2010년 무렵에는 세계인구의 50%이상이 도시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한 산업화,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도시의 환경, 경제 등 생활 여건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에 따른 예기치 못하는 도시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 보건소의 업무가 치료 및 예방 중심에서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이 세종시의 건강증진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코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계획도시인 우리 시 기존 계획도시의 기반 위에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구상, 시 차원의 건강도시창원을 건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건강도시 세종시의 미래상>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건강도시 지속적 개발
- 타 자치단체·세계 여러나라의 건강관광 대표도시 위상 정립
 - ⇒ 환경친화적 도시건설(태양열과 자전거도로, 교통약자 위주 도로망)
 - ⇒ 도시전체 50%이상의 공원·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도입(빛물 등)
 - ⇒ 전 연령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첨단 BRT 운행



世宗特別
自治市議會
Sejong City Council

제4회 세종시의회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2012. 10. 11(목) 10:00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의수

-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안 경과

- 의안번호 : 제 263 호
-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 제출일자 : 2012. 9. 22
- 회부일자 : 2012. 9. 28

2. 제안 이유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함

3. 주요 내용

- 제7조제4항 중 “보건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를 “읍·면·동장에게”로, “읍·면·동장에게 신청된 경우에는”을 “읍·면·동장은”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4항)

4. 관련 법규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기확보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생략
- 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 이상없음
 - 성별영향평가 : 이상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 심의일자 : 2012.09.21
 - 심의결과 : 원안의결

6.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12년 9월 24일 제출하여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 출산장려금 신청의 창구를 보건소와 읍·면·동에 있던 사항을 읍·면·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생 신고를 받는 읍·면·동으로 출산장려금 신청창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심사하여도 가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 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 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산장려금 읍·면·동별 신청현황

(단 위 : 명)

구 분	계	2011년도	2012년도 8월말 현재	비 고
합 계	1,477	780	697	
조치원읍	939	546	393	
연 기 면	38	23	15	
연 동 면	38	22	16	
부 강 면	73	-	73	
금 남 면	127	70	57	
장 군 면	2	-	2	
연 서 면	93	45	48	
전 의 면	73	41	32	
전 동 면	13	10	3	
소 정 면	39	23	16	
한 솔 동	42	-	42	

출산장려금 자녀 년도별 출생순위별 지급내역

2011년도

구 분	지급건수	지급금액(천원)
합 계	780	440,000
첫째자녀	385	192,500
둘째자녀	295	147,500
셋째이상 자녀	100	100,000

2012년도 (6월말 기준)

구 분	지급건수	지급금액(천원)
합 계	334	194,500
첫째자녀	145	72,500
둘째자녀	134	67,000
셋째이상 자녀	55	55,000

2012년도 (7월 ~ 9월)

구 분	지급건수	지급금액(천원)
합 계	363	112,500
첫째자녀	99	38,300
둘째자녀	201	46,100
셋째이상 자녀	63	28,100